

『역사문화연구』 발간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지를 『역사문화연구』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역사문화연구』의 발행 목적은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 성과를 국내 각 대학과 연구소 등에 제공함으로써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제 간 연계 전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학술지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한국·동양·서양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사·경제사·사회사 등 기존의 역사 분야뿐 아니라 기록학·해외한국학·역사콘텐츠 등 새로운 역사학 인접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의 학술지를 목표로 한다.

제3조 (사무국)

본지의 사무국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소재 인문경상관 내 역사문화연구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지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역사문화연구』의 정기발간
2.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
3. 학술지 발행 (단행본, 총서 등)
4. 기타 학술관련 사업

제 2 장 발행인 / 편집인 / 편집위원 / 편집간사

제5조 본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 겸 발행인 1인
2. 편집위원 15인 내외
3. 편집간사 1인

제6조 (임원의 선임)

1.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본지의 편집위원장 겸 발행인이 된다.
2.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촉한다.
3.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편집간사가 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위촉 절차)

1. 선정기준
 - ①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편집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한국사 5명, 동양사 4명, 서양사 4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2. 선정절차
 - ① 편집위원장 겸 발행인이 편집간사와 함께 편집위원 선발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1차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세 분야로 구별하여 후보군을 선정한다.
 - ③ 2차로 연구 대상 시기와 연구 대상 지역으로 후보군을 세분한다.
 - ④ 교내 및 교외 해당 분야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여 1차로 2배수의 편집위원을 선발한다.

- ⑤ 2배수로 선정된 편집위원 후보들의 연구실적 및 학회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⑥ 편집위원장 및 발행인은 편집간사 그리고 해당지역 전공자가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제8조 (발행인/편집인/편집위원/편집간사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본지를 대표하고 본지 발간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거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인의 지시에 따라 본지 발간의 실질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편 집 위 원 회

제9조 (정기회의)

정기 편집위원회 회의는 간기 당 1회 소집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서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회의)

임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 의결)

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연구』의 발간계획 수립

2. 투고논문에 대한 적합성 판정
3. 투고 적합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4.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논문 결정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1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인 연구소 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주요 발간계획의 수립
2. 예산 편성 및 회비 결정
3. 기타 본지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5 장 심 사 기 준

제16조 (대상 논문)

『역사문화연구』는 학술적 탐구 가치가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다룬 정치·경제·사회·문화·기록학·해외한국학·역사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게재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해당분야 혹은 인접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논문 투고를 추천한 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 (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양식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정 없이 통과'(A), '부분수정 후 통과'(B), '대폭 수정 후 재심'(C), '계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① '수정 없이 통과'의 기준에 해당되는 논문은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논문임
 - ② '수정 후 통과'에 해당되는 논문은 질은 우수하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논문임
 - ③ '수정 후 재심'에 해당되는 논문은 주제는 우수하나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어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논문임 (재심 판정을 받은 이후 6개월 내에 재투고하지 않거나, 재심 판정에서 다시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계재불가 처리함)
 - ④ '탈락'에 해당되는 논문은 논문의 기본 틀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논증이 보완되어야 할 논문임 (탈락 논문은 본고에 다시 투고하지 못함)
2.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모아 정해진 규정에 맞게 종합 판정을 내리되, 심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몇몇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편집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판정을 내린다. 판정은 아래와 같이 5개의 경우로 나눈다.
 - ① 계재 : $A \cdot A \cdot A$, $A \cdot A \cdot B$
 - ② 수정 후 계재 : $A \cdot B \cdot B$, $B \cdot B \cdot B$
 - ③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계재" 또는 "수정 후 재심" 여부 판정: $A \cdot$

$A \cdot C, A \cdot A \cdot D, A \cdot B \cdot C, B \cdot B \cdot C$

④ 수정 후 재심 : $A \cdot B \cdot D, A \cdot C \cdot C, A \cdot C \cdot D, B \cdot C \cdot C, B \cdot B \cdot D, C \cdot C \cdot C$

⑤ 게재 불가(탈락) : $B \cdot C \cdot D, A \cdot D \cdot D, B \cdot D \cdot D, C \cdot C \cdot D, C \cdot D \cdot D, D \cdot D \cdot D$

제19조 (심사절차)

1. 편집간사는 원고마감일 (1월 15일, 4월15일, 7월 15일, 10월 15일) 까지 투고된 논문을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기록학, 한국학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투고내역'을 마감일 이후 수일 내로 편집위원들에게 제출한다.
2. 편집위원들은 '투고내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논문에 대해 3명의 전문가들을 심사후보로 선정 한 후 이를 역사문화연구소 편집간사에게 통보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사후보들 가운데 논문 당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고, 편집간사는 선정된 심사자들에게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맡은 논문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특히 표절 여부를 신중히 판단 한 후에 1-2주 내에 심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역사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간사는 각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평과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심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통과'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하며, '수정 후 통과' 기준에 해당 되는 논문은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제의를 반영하여 최종본을 역사문화연구소에 제출할 경우에만 게재될 수 있다. 만일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제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7.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안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본을 보내오면, 편집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하되, 투고자가 <역사문화연구> 편집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제 6 장 발 행 일

제20조 (발행횟수 및 발행예정일)

1. 『역사문화연구』는 일 년에 4회 발간한다.
2. 『역사문화연구』는 매년 2월(발행예정일 2월 28일), 5월(발행예정일 5월 31일), 8월(발행예정일 8월31일), 그리고 11월(발행예정일 11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21조 (회계연도)

본지의 발간 지출 관련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22조 (경비)

본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23조 (예결산)

- ① 본지의 발간과 관련된 예산과 결산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감사는 본지 발간 관련 비용사용에 관련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제3조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제4조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제5조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8월15일부터 시행된다.

『역사문화연구』 윤리규정(개정안)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 (1) 본 윤리규정은 <역사문화연구>의 투고·접수·심사·게재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엄격히 지켜져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 (1) 본 윤리규정은 <역사문화연구>에 투고한 모든 논문의 연구자, 학술지의 심사·편집·간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 그리고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 본 윤리규정에서 다루는 ‘연구부정행위’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으로 규정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② ‘변조’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③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에서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 ⑥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역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 2 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 4조 연구업적

-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주저자' 또는 '제2저자' 등으로 인정을 받는다.
- (2) 연구 논문에 저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기여 정도에 따라 기입한다. 연구에 도움을 준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
- (3) 연구자는 제3조에 언급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표절 및 중복게재

-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저작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기존의 논문을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업적이나 독창적인 주장 또는 그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나 업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註)에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일부분이라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 6조 인용

- (1) 출간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미출간 자료의 경우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 (2) 자신의 주장에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경우 주(註)에서 이를 밝혀야 하며, 어느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느 부분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않은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제 7조 기타(저작권)

- (1) 연구자는 논문과 저술에서 절대로 자료를 위조·변조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한다.
- (4) 본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사문화연구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집필자는 본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이나, FAX, 또는 우편으로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역사문화연구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편집위(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 8조 역할

- (1) 편집위는 투고 논문의 접수, 심사자 선정, 게재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게재 확정된 논문들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는 출판된 원고에 표절, 위조, 변조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해당원고를 삭제해야 한다.

제 9조 공정성

- (1) 편집위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또한 특정한 학문적 입장이나 경향에 치우치지 않고,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 개인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편집위는 오직 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자를 선정하고, 오직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되, 심사결과가 극명히 갈리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3) 편집위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을 비밀로 한다.

제 10조 비밀보장

- (1) 편집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자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복 게재여부에 대한 확인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자를 공개할 수 있다.
- (2) 편집위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편집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편집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 이외의

다른 사람, 특히 투고자에게 심사자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심사자의 윤리규정

제 11조 역할

- (1) 심사위원은 편집위가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담은 심사소견서를 편집위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평가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성실하게 판단하고, 이를 편집위에 통보해야 한다.

제 12조 공정성과 객관성

- (1) 심사자는 연구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투고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편집위가 작성한 심사소견서의 평가 항목별(독창성, 논리성, 참고자료, 학문적 기여도, 각주 형식과 초록 길이 및 내용)로 합당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해당하는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린다. (90-100점 통과, 80-89점 수정 후 통과, 70-79점 수정 후 재심, 70점 아래는 탈락)
- (3) 심사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심 또는 탈락 판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지나치게 편향된 평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 13조 비밀보장

- (1)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중요한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 논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윤리규정 위반 심사 절차

제 14조 윤리규정 위반

- (1) 제2장(연구자의 윤리규정), 제3장(편집위의 윤리규정), 제4장(심사자의 윤리규정)에서 명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자, 외부인 누구든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면 편집위원장이나 윤리위원회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 15조 윤리위원회

- (1) 윤리규정의 위반을 심사하고, 판정하는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윤리위원회는 평상시에 연구소장과 편집위 가운데 2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2명의 외부 인사를 총원하여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 (3)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역사문화연구>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위반자의 행위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인지 심의한다.
- (4)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 등 여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5)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6조 윤리규정 위반 심사 절차

- (1) 연구소의 구성원(편집위원, 운영위원)과 학술지 심사자들은 투고문의 내용과 투고문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윤리위원회(예를 들어 편집위원장 또는 윤리위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해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보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착수하여 윤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예비심사 결과 피심사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본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본심사는 예비심사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예비심사에서 밝혀진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피심사자의 의견을 듣고, 위반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한 후에,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입증한다.

제 17조 제재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확정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사항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인 징계를 결정한다. 먼저 위반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의 징계를 내리고, 다음의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역사문화연구>에 그 사실관계 및 조치 내용 등을 공지하며, 한국연구재단에도 이 사실을 통보한다.
 - ②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의 <역사문화연구> 게재를 원천 취소하고, 전자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③ 윤리규정을 위반한 필자는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역사문화연구>에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없다.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과 심사자는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3년간 편집위원 및 심사자로 위촉될 수 없다.
- ⑤ 피심사자가 제재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8조 제보자의 신원 보장

-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 (2)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3) 제보자가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역사문화연구』 논문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

『역사문화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의 정기 간행 학술지로서 한국과 세계의 역사·문화 전반에 걸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매년 2월 (발행예정일 2월 28일), 5월 (발행예정일 5월31일), 8월 (발행예정일 8월31일), 그리고 11월 (발행 예정일 11월 30일) 연 4회 발행되며, 논문 투고와 원고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다.

I. 논문투고 요령

1. 종류: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의 연구논문, 원고지 70-100매 내외의 서평 또는 새로운 문헌 및 자료의 개관
2. 원고의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 1) 원고 제출 : 훈글 2002 버전 이상으로 작성된 논문 파일을 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https://iohac.jams.or.kr>)를 통해 논문을 등록하고,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역사문화연구소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한다.
 - 2) 제출처 : 우)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경상관 328호 역사문화연구소
전화: 031-330-4142, 팩스: 031-330-4857
전자메일 : iohac@hanmail.net
 - 3) 제출기한 : 2월 28일 발행(1월 15일까지), 5월31일 발행(4월15일까지), 8월31일 발행(7월15일까지), 11월30일 발행(10월15일까지)
 - 4) 주의사항 : 투고논문에는
 - i)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나 **E-mail** 주소를 적는다.

- ii) 간단한 필자소개(전공분야, 주요 관심분야, 현재 직책 등)를 명기한다.
- iii) 원고지 5매 이내의 외국어초록(Key Words 포함)과 국문요약(주제어 포함)을 각각 첨부한다.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 iv) 본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사문화연구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이나, FAX, 또는 우편으로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v) 역사문화연구소가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II. 원고작성 요령

1. 개요

- 1) 투고문은 아래 한글로 200자 원고지 150매 전후로 작성한다.
 - ※ 분량을 초과하면 학술지 1쪽 당(200자 원고지 5매) 1만원의 초과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2) 본문은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되, 원고지 5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각각 붙이고, 국어와 영어로 5단어 내외의 주제어도 각각 첨부한다.
- 3) 본문에서 장은 I, II, III ..., 절은 1, 2, 3 ... 으로 하고 항은 1), 2), 3) ... 의 순서로 배열한다.
- 4) 연구비 출처나 논문의 발표 사실은 본문 1쪽의 각주란에 별표(*)로 표시.
- 5) 제1 저자는 별표 하나(*)로 표시하고, 제 2저자는 별표 2개(**)로 구분하여 순차 병기한다.

- 6) 각주 및 참고문헌에서 동양서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을 표기할 때 논문에 표기된 ‘간격 있는 꺾쇠기호’ 「 」, 『 』가 아니라 ‘간격 없는 꺾쇠 기호’ 「 」, 『 』를 사용한다. 「논문」, 『단행본』이 아니라 -> 「논문」, 『단행본』을 사용할 것.

※ 교정쇄는 필자에게 1회 혹은 2회에 걸쳐 전달된다.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의 오류로 필자가 입은 피해에 본 연구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각주

※ 각주에서 서양어의 경우 저자 표기는 이름, 성의 순서로 표기하고, 동아시아어의 경우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한다.

1) 동양서: 저자, 「논문제목」, 『책제목』(발행연도), 인용페이지(쪽)

- * 박성래, 『한국과학사상사』(책과함께, 2012), 52쪽.
- * 이은순, 「日帝時代 農村女性の 生活과 民間信仰」, 『國史館論叢』83 (1999), 45쪽.
- * 徐文明, 『十一世紀의王安石』(北京, 2007), 179쪽.
- * 洪秋芬, 「1920年代臺灣保甲制度和社會運動關係初探」, 『中國歷史學會史學集刊』26 (1994), 125-138쪽.

2) 서양서: 저자, “논문제목”, 책제목(이탤릭체) (발행연도), 인용페이지(p., pp)

- *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ew York, 1947), p.49.
- * Walter Lipgens(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1 (Berlin; New York, 1985), p.53.
- * M. Malowist, “Poland, Russia and Western Trade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Past and Present*. Vol.13 (1958), pp.28-41.

* Morris Rossabi, “The Decline of the Central Asian Caravan Trade,” J. D. Tracy (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Long-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Cambridge, 1990), pp.351-370.

3) 번역서: 저자 (역자 역) 『책명』 (출판사, 연도) 쪽수.

* 모리스 뚝(김대환 역), 『자본주의 발전연구』 (동녘, 1986), 30-31쪽.

4)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동서양의 저술 모두 ‘앞의 책’, ‘앞의 논문’, ‘전계서’, ‘op. cit.’, ‘Ibid’ 등이 아니라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 최갑순, 「中國의 城隍 信仰」, 『외대사학』7 (1997), 443-462쪽.

-> 최갑순, 「中國의 城隍 信仰」, 445쪽.

* 임영상, 「동방정교회의 역사적 전개」, 『외대사학』12 (2000), 631-651쪽.

-> 임영상, 「동방정교회」, 445쪽.

* F. Braudel, F. Spooner, “Price in Europe from 1450 to 1750,”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4: The Economy of Expanding Europe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Cambridge, 1967), pp.374-486.

-> F. Braudel, “Price in Europe,” p.432 참고.

※ 이상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에 용이하도록 통일된 원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3. 참고문헌

※ 참고문헌에서 서양어 저자의 표기는 각주에서와 달리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한다.

- 1) 먼저 자료의 성격에 따라 1. 1차문헌, 2. 단행본, 3. 논문 순으로 명기한다.
- 2) 다음으로 언어에 따라 한국어, 해당언어(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영어 등의 순서로 배열한다.
- 3) 같은 저자가 여러 저술을 표기하는 경우 발행 연도의 순으로 배열하되 맨 위의 것만 저자명을 표기하고, 아래의 것은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고 _____로 표시한다. (아래 사례 참조)

(사례)

1. 1차문헌

미국사연구회,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소나무, 1987).

王安石, 『臨川先生文集』 (中華書局 香港分局, 1971).

王安石, 『王文公文集』(上下) (上海人民出版社, 1974).

Lipgens, Walter(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1 (Berlin; New York, 1985).

Vernadsky, George(ed.). *A Source Book for Russian History from Early Times to 1917* (New Haven, 1972).

2. 단행본

박성래, 『한국과학사상사』 (책과함께, 2012)

Dobb, Maurice.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ew York, 1947).

3. 논문

- 권태억, 「통감부설치기 일제의 조선 근대화론」, 『國史館論叢』53 (1984).
- _____, 「통감부시기 일제의 對韓 농업시책」, 『노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1986).
- 이은순, 「日帝時代 農村女性の 生活과 民間信仰」, 『國史館論叢』83 (1999).
- 임영상, 「동방정교회의 역사적 전개」, 『외대사학』12 (2000).
- 최갑순, 「中國의 城隍 信仰」, 『외대사학』7 (1997).
- Malowist, M. "Poland, Russia and Western Trade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Past and Present*. Vol.13 (1958), pp.28-41.
- Rossabi, Morris. "The Decline of the Central Asian Caravan Trade," Tracy J. D. (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Long-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Cambridge, 1990).